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	----

제출년월일 : 1999. 12. 16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산업법시행령개정('99. 3. 3)으로 수산 관련 면허·허가등 제증명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른 수산관련 제증명등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수산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를 신설함

○ 어업권원부의 열람(1건, 500원) 외 2건

나. 수산에 관한 신청 수수료를 신설함

○ 어업면허신청(1건, 3,000원)외 8건

3. 관계법령

○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증명등수수료) 구분란 【증명】란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수산에 관한 증명							
(1)	어업권원부의 열람	1	건	500	원		
(2)	어업권원부의 등·초본 교부	1	건	1,500	원		
(3)	어장도 교부	1	건	1,000	원		

별표1(제증명등수수료) 구분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에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수산 관계							
(1)	어업면허 신청	1	건	3,000	원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	건	3,000	원		
(3)	어업권 이전,분할,변경허가 신청	1	건	2,500	원		
(4)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1	건	2,500	원		
(5)	연안어업허가,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1	건	2,500	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1	건	3,000	원		
(7)	연구(교습)어업 승인 신청	1	건	1,500	원		
(8)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	건	3,000	원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1	건	3,000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구분	기준	요액	구분	기준	요액
【증명】			【증명】		
1.~4.(생략)			1.~4.(현행과 같음)		
(신설)			5. 수산에 관한 증명 (신설)		
			(1) 어업권원부의 열람	1건	500원
			(2) 어업권원부의 등·초본교부	1건	1,500원
			(3) 어장도 교부	1건	1,000원
5.(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8. (생략)			1.~8.(현행과 같음)		
(신설)			9. 수산관계		
			(1) 어업면허 신청	1건	3,000원
			(2)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1건	3,000원
			(3) 어업권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	1건	2,500원
			(4)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신청	1건	2,500원
			(5) 연안어업허가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	1건	3,0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3,000원
			(7) 연구(교습)어업 승인신청	1건	1,500원
			(8)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3,000원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500원
9.(생략)			10.(현행 제9호와 같음)		